

한국금융공학회, 한국재무관리학회, 한국금융산학학회 공동 심포지엄  
("ESG 의무공시와 금융투자업계 대응방안") 발표자료

# ESG 공시 규제외 해외 동향 - EU를 중심으로

정책연구본부 (발표: 송민경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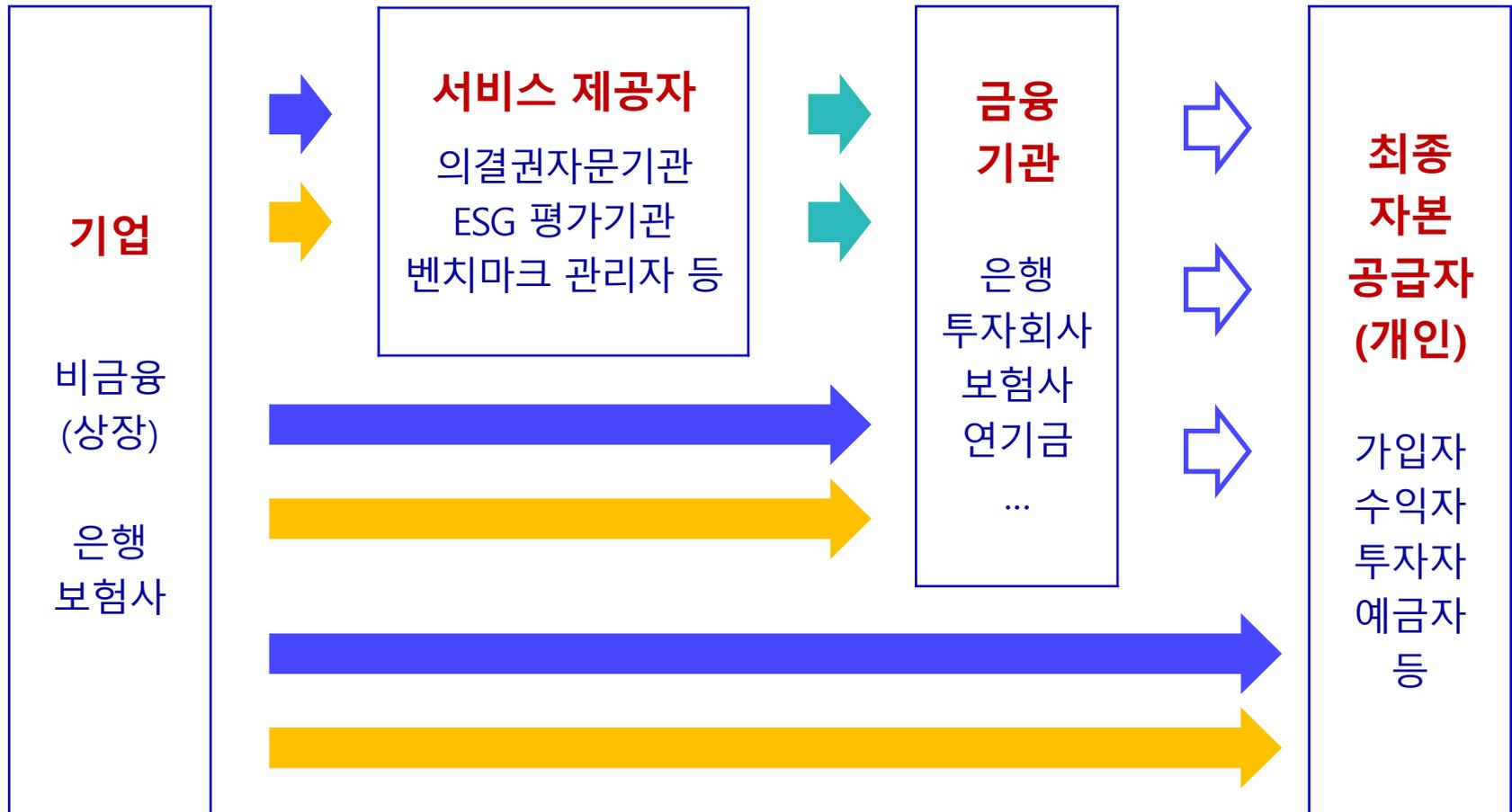
- 일 시 2024년 11월 13일(수) 14:20~14:45
- 장 소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F 루비홀

- I. 도입
- II. EU의 ESG 공시 규제 (1): 공통
- III. EU의 ESG 공시 규제 (2): 서비스 제공자
- IV. EU의 ESG 공시 규제 (3): 금융기관
- V. EU의 ESG 공시 규제 (4): 기업
- VI. 시사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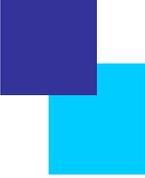
# I. 도입

## ❖ ESG 정보의 흐름



## ❖ ESG 관련 공시에 관한 EU 규제 동향

공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▪ 감사지침·법 (Audit Directive, Audit Regulation) (2014)</li><li>▪ 주주권지침 SRD (Shareholder Right Directive) II (2017)</li><li>▪ 녹색분류체계법 TR (Taxonomy Regulation) (2020)</li></ul>
서비스 제공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▪ 의결권 자문기관 규제 (in SRD II 2017)</li><li>▪ 기후벤치마크법 CBMR (Climate Benchmark Regulation) (2019)</li><li>▪ ESG 평가 규제법(안) ESGR (2024)</li></ul>
금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▪ 퇴직연금운용기관지침 IORP II (2016)</li><li>▪ 지속가능금융공시지침 SFDR (2019)</li><li>▪ 금융사 위험관리법/지침 (CRD5 6, CRR2 3, IFD, IFR, Solvency II DR) 등</li></ul>
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▪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 CSRD (2022)</li><li>▪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 CSDDD (2024)</li></ul>



## II. EU의 ESG 공시 규제 (1): 공통

## II. EU의 ESG 공시 규제 (1): 공통

### ❖ 감사 지침·규정 (2014)

- 법정감사지침 Statutory Audits Directive (2006)
- 회계지침 Accounting Directive (2013)
- 감사지침 Audit Directive (2014), 감사법 Audit Regulation (2014)

#### ▪ 법정감사지침 (2006)

- 주식회사의 경우 **주총에 외부감사인 승인권 부여**

#### ▪ 감사 지침·규정 (2014)

- 감사인 의무 교체
- 감사인의 일정 비감사서비스 제공 금지
- 감사위원회 역할 강화 (내부통제, 위험관리, 감사인 감시, 독립성 평가 등)

**회계 투명성 증진, ESG 공시 기반 마련**

## II. EU의 ESG 공시 규제 (1): 공통

### ❖ 공통 ESG: 개정 주주권지침 (2017)

- EU 회사법 및 지배구조에 관한 실행계획 (2003, 2012)
- **SRD (Shareholder Right Directive) I (2007), SRD II (2017)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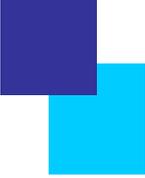
#### ▪ SRD I (2007)

- 주총에 제출할 전체 정보의 사전 제공, 회사의 주총 결과 상세 공시 등

#### ▪ SRD II (2017)

- "투명성 증진", "참여하는 주주"
- 주요 내용: ①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(의결권 행사, ESG 점검, 이해상충 관리 등 포함) 정책 및 이행, 투자전략 및 수탁사와의 위탁계약 주요사항 등 공시, ② 이사 보수 정책, 보수보고서에 대한 주주권 확대 등

▶ 투자자에게 ESG 개선 등 관련 활동에 관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  
주주 참여, 장기주의, 주주·기업간 대화 및 ESG 개선을 촉진



## Ⅲ. EU의 ESG 공시 규제 (2): 서비스 제공자

# III. EU의 ESG 공시 규제 (2): 서비스 제공자

## ❖ 의결권 자문기관: 개정 주주권지침 (2017)

- 자문기관 그룹, 자율규제 ("Best Practice Principles") 시행 (2014~)
- **의결권 자문기관 규제 관련 내용을 SRD II (2017)에 반영**

### ▪ SRD II (2017)

- 의결권 자문기관의 **기존 자율규제를 그대로 반영한 공시 의무를 명시**
- (1) 의결권 자문기관이 적용하는 행위준칙(Code of Conduct)이 존재한다면 그 내용, 아닌 경우 명확하고 합리적인 사유를 공시
- (2) 다음 사항을 공시: ① 방법론의 핵심 특성, ② 정보 출처, ③ **업무 품질 제고를 위한 절차 및 담당직원의 적격성**, ④ 해당 국가 시장·규제의 특수성 고려 여부 및 방법, ⑤ 시장별 의결권 행사 정책의 핵심 특성, ⑥ 회사와의 소통 여부 및 정도와 성격, ⑦ **이해상충 방지·관리 정책**

**의결권 자문업무의 전문성·정확성 및 신뢰도를 제고  
기관투자자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고, 최종 투자자를 보호**

# III. EU의 ESG 공시 규제 (2): 서비스 제공자

## ❖ 벤치마크 설정자: 환경벤치마크법 (2019)

- 벤치마크법 BMR (Benchmark Regulation) (2016)
- **환경벤치마크법 CBMR (Climate Benchmark Regulation) (2019)**
- 3개의 위임법 (DR: Delegated Regulations) (2020)

### ▪ BMR (2016)

- 벤치마크 설정자, 자료제공자, 이용자 대상 규제
- **설정자: 방법론·자료제공자 행위기준 공개, 자료검증, 등록, 이해상충 방지 등**

### ▪ CBMR (2019)

- 2개의 신규 환경벤치마크 도입, 모든 벤치마크의 ESG 관련 사항 공개
- **ESG 목적 추구 여부, ESG 요인 고려 방법론, 특정 ESG 지표 등 공시 (DR 2020)**

ESG 관련 벤치마크 신뢰도 제고, 효과적인 ESG 자금 흐름 유도

# III. EU의 ESG 공시 규제 (2): 서비스 제공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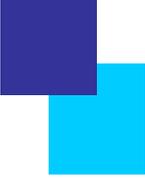
## ❖ ESG 평가활동: ESG 평가활동 규제법(안) (2024)

### ▪ ESG 평가 규제법 ESGR (ESG Ratings Regulation) (202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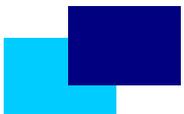
### ▪ ESGR (2014)

- 정의, 적용 대상, 비례성 원칙
- 지배구조(부서 분리, 담당자 전문성 등), 이해상충 관리, 가격정책 등 규정
- 공시 혹은 제공: ① (E, S, G 각 요인별) 평가방법론 개요(가정, 출처, 한계, 가중치, 과학적 근거 활용 여부 등 관련), ② E, S, G 평가 시 관련 국제기준 고려 여부, ③ 이종 중요성(ESG 위험, 기업활동의 외부 영향) 채택 여부, ④ 소유구조, ⑤ 평가 토픽 설명, ⑥ 이해상충 위험 및 조치사항 등
- ESG 금융상품 판매 등 위해 내부 ESG 평가 시행하는 금융사도 동일 공시의무

ESG 생태계, ESG 정보 흐름의 기초 인프라 역할  
투자전략, 위험관리, 공시 의무 이행 등 의사결정·활동 지원



## IV. EU의 ESG 공시 규제 (3): 금융기관



## IV. EU의 ESG 공시 규제 (3): 금융기관

### ❖ 퇴직연금 ESG: 퇴직연금운용기관지침[연금지침] (2016)

- IORP (Directive on Institutions for Occupational Retirement Provision) I (2003)
- **IORP II (2016)**

#### ▪ **IORP II (2016)**

- 대상: 퇴직연금사업자, 국민연금 등 연기금, 공제회 등
- 지배구조, 건전성 감독 장 추가, 보고·공시(PBS) 확대, 감독기구 권한 강화
- **투자 의사결정 시 ESG 고려 방식 공시, 투자정책서에 기재**
- **ESG를 반영한 효과적 지배구조 체계 구축, 임직원 적격성**
- **위험관리 시 ESG 투자위험 등 반영 방식 공시, ESG 투자위험 등 자체 평가**

**연기금의 ESG 투자 및 투자자 활동 촉진,  
운용사 ESG 관리 통한 시장의 ESG 투자 및 투자자 활동 활성화**

# IV. EU의 ESG 공시 규제 (3): 금융기관

## ❖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 (2019)

- "Action Plan: Financing Sustainable Growth" (2018)
- **SFDR (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Directive) (2019)**

### ▪ SFDR (2019)

- 투자 운용 수행하는 투자회사·은행·보험·연기금, 자문업자에 적용
- ESG·지속가능성에 관한 이중 중요성(double materiality) 개념 채택
- 상품 유형 구분, ① 회사 및 ② 상품 수준 공시 의무 (사전, 홈페이지, 사후)
- ① ESG 위험의 투자 통합, 투자의 중대한 부정적 위험(PAIs) 실사 정책 등 공시
- ② ESG 관련 상품의 ESG 투자 목표, 지표, 벤치마크 지수, 방법론 등 공시

▶ 투자자·금융사 간 ESG 정보 비대칭 및 그린워싱 완화, 투명성 확대  
ESG 관련 자본 흐름·공급 확대, 장기주의 촉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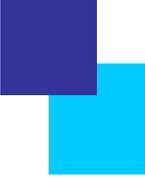
# IV. EU의 ESG 공시 규제 (3): 금융기관

## ❖ 금융회사 위험관리 및 건전성 규제·감독 (2019, 202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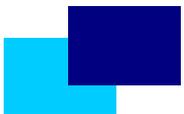
- "Action Plan: Financing Sustainable Growth" (2018)
- CRD (Capital Requirement Directive) V (2019), CRR (Capital Requirement Regulation) II (2019)
- IFD (Investment Firm Directive) (2019), IFR (Investment Firm Regulation) (2019)
- 지급여력규정 위임규정 Solvency II Delegated Regulation (2021)

- **CRD V, CRR II, IFD, IFR(이상 2019), Solvency II 위임규정(2021)**
  - 대상: 은행, 보험, 투자회사 등 금융회사
  - **ESG 위험에 관한 공시 의무화** (정의, 식별·관리 등 절차, 평가 기준 등)
  - 유럽은행청(EBA)에 은행, 투자회사의 ESG 위험 감독에 관한 사항 검토 명령

▶ 금융회사가 대출, 투자, 보험 등에서 ESG 위험을 고려하도록 촉진  
금융회사의 **ESG 건전성 규제·감독** 틀 마련, 금융안정성 제고



## V. EU의 ESG 공시 규제 (4): 기업



# V. EU의 ESG 공시 규제 (4): 기업

## ❖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 (2022)

- 회계지침 Accounting Directive (2013)
- 비재무정보보고지침 NFRD (Non-Financial Reporting Directive) (2014)
- **CSRD (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) (2022)**

### ▪ CSRD (2022)

- 각종 ESG 규제의 확대·강화에 따라 기존 NFRD를 개선
- 대상 확대 [ $\geq 50,000$ , 대다수 상장사, 은행·보험(노동자 $\geq 250$ ), 역외 대형 모회사]
- ① 이중 중요성, ② 중대한 부정적 영향(PAIs) 실사 관련 공시, ③ 가치사슬
- 실사: PAIs 식별, 감시, 방지·완화·피해구제·종식 등 활동 전반
- 공시 내용(ESRS)·형식 통일, 경영보고서(통합경영보고서), 독립적 제3자 인증 등

기업을 ESG 공시 범위 확대, 비교가능성 및 신뢰도 제고,  
각종 ESG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핵심 기반 마련

# V. EU의 ESG 공시 규제 (4): 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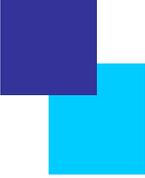
## ❖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 (2024)

- 유럽의회 결의안 (2021.3), 집행위원회 제정안 (2022.2)
- **CSDDD (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) (2024.7)**

### ▪ CSDDD (2024)

- 대상 [① 역내 대형회사(약 6,000사)(노동자 $\geq$ 1,000, 세계 순매출 $\geq$ 4.5억 유로 등), ② 역외 대형회사(약 900사)(EU 내 순매출 $\geq$ 4.5억 유로 등)]
- **위험 기반 인권·환경에 관한 실사 의무 명시, 단계적 접근**
- **실사: PAIs 관련 경영활동·위험관리에의 통합, 식별·평가, 방지·완화, 피해구제, 이해관계자 대화, 고충처리, 실사 정책·활동 평가, 공개·소통**
- 집행 강화 [감독기구 명시, 공공조달, **벌금( $\geq$ global 순매출 5%), 민사소송 등]**

**기업의 인권환경 실사 직접 의무화 (공시 등 간접수단이 아님)**  
**ESG·지속가능성을 반영한 회사법제 및 지배구조의 개혁**



## VI. 시사점

## ❖ 시사점

- EU 규제 강화의 직·간접 영향을 분석하고 **적극 대응할 필요**
- ESRS(CSRD)·SDS(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, ISSB), KSSB 기준 외에도 **ESG 공시 규제, 나아가 ESG 규제는 매우 다양한 형태**
- 해외 ESG (공시) 규제의 흐름을 고려한 국내 규제 논의에 유의
- ESG 공시 규제에서 공통 공시 항목(전문성, 이해상충 방지 등)에 주의
- 규제 우선순위 고려 필요 (**금융사·기업 규제 vs 서비스제공자 규제**)

**감사합니다.**

